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1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,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

(단위: 만원, 1국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
		방송·전기통신사 업용 무선국			그 밖의 무선국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	법 제90조	50	100	150	30	50	70

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	제1호의2							
2)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 제2호	40	60	80	20	30	50	
3)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	법 제90조 제2호	100	150	200				
4)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	법 제89조의3 제1호	150	200	300				
5)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	법 제90조 제2호의2	100	150	200	50	100	150	
6)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	법 제90조 제3호	100	150	200	50	100	150	
7)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 제3호	40	60	80	20	30	50	
8)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·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91조 제1호	80	130	150	50	80	100	
9) 법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	법 제91조 제2호	50	100	150	40	80	100	
10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91조 제3호	50	100	150	30	50	70	
11)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	법 제91조 제4호	50	100	150	30	50	70	

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								
12)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91조 제5호	50	100	150				
13) 법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	법 제89조의3 제2호	150	200	300	100	150	200	
14)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	법 제90조 제5호	100	150	200	50	100	150	
15)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	법 제91조 제6호	50	100	150	30	50	70	
16)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8	100	150	200	50	100	150	
17)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(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90조 제6호	100	150	200	50	100	150	

나. 그 밖의 과태료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 제1호	30	50	80
2)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·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, 안테나공급전력, 안테나의 형식·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	법 제90조 제1호	100	200	300

하여 운용한 경우(제23조제4호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)				
3)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89조의2	500	750	1,000
4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91조 제3호	10	30	50
5) 법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 제4호	100	200	300
6)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2	100	200	300
7)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 제4호	50	70	100
8)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·대여한 경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3	100	200	300
9)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 제5호	50	70	100
10)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4	100	200	300
11)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(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5	100	200	300
12)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6	100	200	300
13)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 제5호의7	100	200	300
14)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중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경우	법 제91조 제7호	50	100	150